

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기관명·단체명	사업자등록번호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
	주소		
집적시설 위치	(주소) (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및 위치) (인근 전문회의시설의 명칭 및 해당 시설로부터의 거리)		
집적시설 종류	☐ 숙박시설 ☐ 판매시설 ☐ 공연장 ☐ 그 밖의 시설(시설종류:)		
집적시설 규모			

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된 시설인 경우: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합니다)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: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영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	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 청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집적시설의 지정 및 공고	→	통 보
신청인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				

작성방법

1. 직접시설 종류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릅니다.

- 가. 숙박시설: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(「관광진흥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을 말합니다)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
- 나. 판매시설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- 다. 공연장: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
- 라. 그 밖의 시설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

2. 집적시설 규모란은 다음 각 목의 집적시설 종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.

- 가. 숙박시설: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(호텔업의 경우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텔업의 종류를 말합니다), 객실 수 및 시설면적(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
- 나. 판매시설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및 시설면적
- 다. 공연장: 객석 수 및 시설면적
- 라. 그 밖의 시설:
 - 1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형, 자료 규모 및 시설면적
 - 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시설종류 및 시설면적